

확인결과 통지서

사업장명	(주)에스에프에이 KT&G 광주공장 자동창고 증축(물류시스템 설비)				
업종	건설업	전화번호	041-539-9502	Fax 번호	041-379-6479
소재지	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30				
사업주 성명	김영민 (안전보건총괄책임자 : 배성우)				
대상공사종류	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				
확인기간	2023. 10. 13. (1일간)				
확인자	소속(공단) 건설안전부	직위	과장	성명	최태근 최태근
입회자	소속(사업장) (주)에스에프에이	직위	숙식	성명	배성우 배성우
확인결과 요약	<p>당 현장 공정률 약 2%이며 Base Plate Chipping 진행 중입니다.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습니다. 향후 가설지원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용 준비합니다.</p>				

※ 개선 제출일 : 2023. 10. 13.

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확인 결과 **적정함** (불임과 같이 ~~조건부~~ 적정함) 을 통지합니다.

2023년 10월 13일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장



첨부서류 : 개선사항 기재서 1부(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

개선사항 기재서

사업장 관리 번호	60981352276	사업장 개시 번호	92305632657
발 주 자	케이티앤지	공 사 금 액	11,556백만원
공 사 규 모	창고 1개동 (높이40.5m)	공 정 륜	2 %
공 사 시 작 일	2022. 9. 8.	공 사 종 료 일	2024. 12. 31.
안 전 보 건 총괄 책임자	(성 명) 배성우 (연락처) 010 4223 3116	안 전 관 리 자	(성 명) 김명준 (연락처) 010 3591 6148
확 인 시 작 업 공 증	Base Chipping		
차 기 확 인 예 정 대형사고위험작업	Rock 건립 작업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	예 정 일 2023. 11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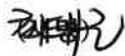
※ 상기 차기 확인 예정인 대형사고 위험작업 예정시기가 현장 사정상 변경될 경우 해당 작업 15일 전까지 공단 통합지원시스템에 변경 입력바랍니다.

안전보건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1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: 직책, 성명, 휴대폰
2. 개인정보 수집.이용 목적: 업무수행을 위한 연락, 고객만족도 조사, 안전보건정보 송부
3. 보유기간: 공사종료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년간 보존 후 폐기

본인들은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확인업무 수행의 상대방으로서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의 금품·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받지 않았습니다. 이 사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명하여 청렴의무 이행을 확인합니다.

공단 확인자: 최태근



사업장 입회자:

 (성명)

※ 확인결과 등 공단 직원의 업무처리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전화 또는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I.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과의 부합여부

1.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실태

가. 현황 및 점검사항

	직책	성명	선임일자	직무교육 이수여부
안전 조직	안전보건총괄책임자	배성우	2023. 9. 4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이수(신규, 보수)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이수 2022. 10. 1.
	안전관리자	김명준	2023. 8. 31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이수(신규, 보수)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이수 (2023. 10월 이수예정) 2022. 6. 3 이후
	보건관리자	_____		<input type="checkbox"/> 이수(신규, 보수)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이수

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변경 시 계획서 인수.인계 여부 실시(9.4) 미실시 해당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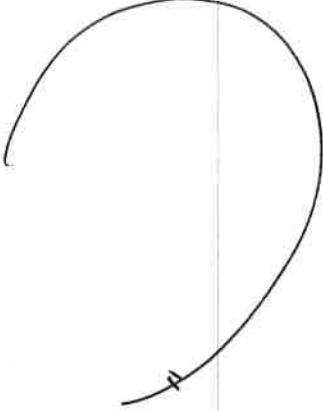
※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유해.위험방지계획서와 심사결과서 등을 반드시 인수.인계하고 심사결과 통지 시 첨부된 『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인수.인계 확인서』를 작성하여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산업안전 보건 관리비	법정 안전관리비	151,394,794 125,913,329 원		계상 실행	각등		원 원
	사용금액 (23.4) 현재)	12,697,589 원 (사용율 : 8 %)		사용항목 적정여부			
주요 건설기계 관리	안전인증	타워 크레인	실시: 7 대 미실시: 7 대	리프트	실시: 7 대 미실시: 7 대	곤돌라	실시: 7 대 미실시: 7 대
	안전검사	타워 크레인	실시: 7 대 미실시: 7 대	리프트	실시: 7 대 미실시: 7 대	곤돌라	실시: 7 대 미실시: 7 대
기타	기타 관리적 사항 (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 교육,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등)	1. 조반 작성 보합사항 반영 : 125,913,329 → 151,394,794 2. " : 비상사태 시나리오 보합					

나. 지적사항

지적사항	개선사항
	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음

2.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·위험방지계획 이행실태

위치 및 세부작업	유해·위험요인	개선 필요사항
		<p>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됨</p>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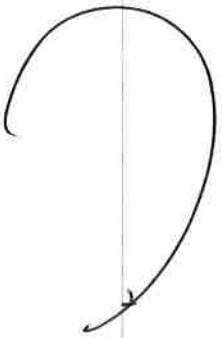
3. 심사결과 「조건부 적정 이유 및 보완사항 기재서」 관련 조건부 사항 이행실태

구 분		해당 항목(번호) 또는 내용
심 사 조건부 사 항	보완완료	1.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
	향후보완	2-1 크레인 2-2 Rack 철근 작업 2-3 Stacker Crane 3. 미검공사 개선예보
	미보완	—

[보완 제출이 필요한 사항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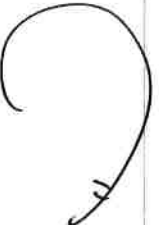
—

II.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

위치 및 세부작업	변경 내용*	개선 필요사항
	<p>별경된 사항은 없음</p> 	

* 시행규칙 [별표 10] 제2호 「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 주요 작성대상」에서 주요 공법 및 작업방법의 변경에 한해 기재

III. 추가적인 유해·위험요인의 존재 여부

위치 및 세부작업	추가 유해·위험요인	추가대책 수립 필요사항
		

※ 계획서 대상공사에 포함되는 작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수립이 필요한 사항 기재

IV. 향후 주요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지원

위치 및 세부작업	유해·위험요인	안전대책
275ton 크롤러 크레인 작업	조립 작업 시 맞물 등 악화	1) 안전보안계획 제3522 작업계획서 마련 2) 안전보안계획 제3522 관리감독자 유해위험방지 확인 3) 조립장소는 출입차 금지 4) 작업의 방법, 순서를 미리 정하며. 5) 크레인 견인방지 장치나 브레이크, 콘크리트 원장과의 기동 전 점검할 것 12.2ton 안양가능 (Max 4ton)

750ton Crane

275ton Crawler Crane

12.2ton 안양가능 (Max 4ton)

→ N

→ OP

HP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

→